

제 836 호  
81. 4 2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 집 : 문화공보관 김 진 호  
전화 75-7834  
인 색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 1507 호 :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조례 중개정조례.....	3
제 1508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중개정조례.....	14
◎ 규 칙		
제 230 호 (교육위원회규칙) :	서울특별시사설강습소수강료에 관한 규칙중개정규칙.....	14
◎ 고 시		
제 135 호 :	도시계획사업 ( 공공하수도 ) 실시계획인가.....	19
제 139 호 :	도시계획시설 ( 학교, 도로 ) 변경지적승인.....	20
제 141 호 :	서울특별시고도지구변경결정.....	20
제 142 호 :	공원시설사용결정고시.....	21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143 호 :	공평구역제 6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23
제 144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일부변경결정및 지적승인	26
제 145 호 :	사방지의지정	26
제 146 호 :	도시계획시설 ( 고속철도 ) 지적승인	27
제 147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28
제 148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시행자신청 고시	29
제 149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29
제 150 호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지적승인	31
제 151 호 :	도시계획사업 ( 백화점 ) 시행허가	31
제 152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및하수도 ) 실시계획인가	32
제 153 호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지적승인	33
제 154 호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및 지적승인	33
제 155 호 :	도시계획사업 ( 여객자동차정류장 ) 변경결정 고시	34
제 156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변경	34
제 157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35
제 158 호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지적승인	35

◎ 공 고

제 117 호 :	표시정지처분공고	36
제 118 호 :	기본측량실시공고	36
제 119 호 :	서소문구역제 3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 공람공고	37
제 120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38
제 122 호 :	서울특별시포장도로개수공사공고	41
제 2 호 ( 강서구공고 ) :	공인개각공고	42
제 45 호 ( 동작구공고 ) :	동장직인개각공고	43
제 30 호 ( 강동구공고 )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44

◎ 예 규

제 408 호 :	서울특별시기초점설치및관리규정	44
-----------	-----------------	----

◎ 사 명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허가조례중 개정 조례틀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1981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507 호

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허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조례는 양곡관리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 21 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령"이라한다)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한다) 에게 위임된 감중가공업허가에 관하여 그 처리절차 및 시설기준과 법제 16 조제 1 항 단서 및 영제 14 조제 2 항 규정의 일정규모이하의 감중가공업 (이하 "소규모제분업"이라한다)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감중가공업허가" 다음에 "및 소규모 제분업신고"를

삽입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하고 동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제 1 항 규정의 감중가공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하고 인접주택 기타 시설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제 2 항 다음에 제 3 항 내지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소규모 제분업의 신고는 별지 제 1-1 호서식의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그 접수일로부터 2 일이내에 적합여부 (부적합일 경우에는 반려 또는 보완통지) 를 통지하되 적합한 신고일 경우에는 별지 제 8 호서식에 의한 시설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여야한다.

⑤구청장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조사하고 적합한 시설로 인정되면 별지 제 9 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제 4 조 제 1 항중 "감중가공업"을 "허가받은 감중가공업"로 하고 동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소규모 제분업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 (이설, 증설, 개설, 주소, 합설) 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는 별지



별표 2) 영 업 정 지 및 취 소 기 준	
처 분 구 분	위 반 내 용
가. 영업정지 1월	1. 보고를 3회이상 불이행한때 2.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임대한때 3. 필요한 장부의 기재에 관한명령을 2회이상 불이행한때 4. 신고없이 휴업 또는 재개업하여 1월이상 경과한때 5. 시설의 확인점검에 의한 시정지시를 기한내에 불이행한때 6. 기타행정지시 사항을 위반한때
나. 영업정지 2월	1. 법제 17조 제 2항 제 1호 내지 제 6호, 법제 15조의 2 또는 영제 17조의 2 제 3호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때 2.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아니하고 양도, 이전 또는 시설을 변경한때 3. "가"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고 3월이내에 다 시 "가"각호의 1에 해당하게될때
다. 허가 및 등록취소	1. "나"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고 3월이내에 다 시 "나"각호의 1에 해당하게될때 2. 갑종가공업의 폐지신고를 그 폐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하지 아니한때. 3. 휴업한자가 휴업후 6월이상이 경과하여도 재개업하지 아니한때. 4.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를 한때

(별지 제 1-1 호서식)

소규모계분업소신고서

신 고 인	성 .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설 치 업 소	설 치 장 소							
	상 호							
	업 종							
건 물	건 물 구 조	전 할 용 도	전 평			비 고		
가 공 능 력 (1일시간기준)	구 분	품 목	계 분	( )	( )	( )	( )	비 고
		재 품						
	원 료							
동 력 및 기 계 시 설 내 역	시 설 명	종 별	형 식	규 격	대 수	마 려	기 타 부 대 시 설	
준 공 년 월 일								
기 타 (참 고) 사 항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허가 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계분 업 신고를 위 내용과 같이 합니다.								
19 . . . . .								
신 고 인						(인)		

<p>&lt;별지제 4-1 호서식&gt;</p> <p style="text-align: center;"><u>소규모제분업 (명의변경, 임대, 시설변경, 장소이전등) 신고서</u></p>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p>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허가 조례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내용 및 첨부 서류와 같이 신고합니다.</p> <p>첨부서류</p> <p>(1) 임대차 내지 변경계약서</p> <p>(2) 인감증명서</p> <p>(3) 등 록 증</p> <p style="text-align: right;">19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span style="float: right;">㉔</span></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별지제 5-1 호서식>

소규모제조분업 ( 휴업, 재개업, 폐업 )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신고년월일	
	업 종			
	상 호			
( 휴업, 재개업 폐업 ) 이 유				
휴업기간				
재개업일				

서울특별시 양쪽가공업허가 조례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9 . . . . .

신고인

①

귀 하



<별지 제 6 호서식>										조사 년월일 . . .				
양곡가공업허가 (등록) 대장										조사자직성명				
규모구분					허가번호									
업비별					공장소재지									
설치년월일					상 호									
허가년월일					경영자성명									
변경 허가번호	상 호				변경 허가번호	변경년월일								
	허가번호					경 영 자 성 명								
변경 허가번호	상 호				변경 허가번호	변경년월일								
	허가번호					경 영 자 성 명								
주 요 기 계 시 설 현 황	종		별		형식		규격		대수		비고			
적 요	공장부지		평		건평		평		지붕		동가호수		호	
	연간연료 취급량		정 미 정 맥		계 분		1일 10시간 생산능력		정 미 정 맥		계 분			
			가마 가마		소 맥 미 곡 가마 가마				정 미 정 맥 가마 가마		계 분 소 맥 미 곡 가마 가마			

<별지제 6-1 호서식 > 소규모제분업농특대장		조사 년월일 조사자직성명				
		규모구분	등록번호	업종	소재지	설치년월일
신고년월일	상호	성명	변경년월일	상호	성명	
변경후	상호	성명	변경년월일	상호	성명	
변경후	상호	성명	변경년월일	상호	성명	
주 요 기 재 시 설 상 황	종	별	형식	규격	대수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요	( )					

<별지제 7호서식>

양목가공업허가교부대장

계인 번호	허가 월일	공장 소재지	상호	대표자 성명	허가 업종	주요시설								확인		
						종별	형식	규격	대수	종별	형식	규격	대수	담당자	수량	

제 636 호 · 시

<별지제 7-1호서식>

소규모제조업등록증교부대장

계인 번호	등록 번호	신고 월일	업체 소재지	상호	대표자 성명	등록 업종	주요시설								확인	
							업종	형식	규격	대수	종별	형식	규격	대수	담당자	수량

제 1931.4.27

50-11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 4. 2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장갑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508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  
변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위원비용 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중 일비 30,000 원을 일비 50,000 원으로 한다.

부 칙 ( 81. 4. 29 )

이 조례는 1981.5.1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사설강습소수강료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공포한다.

1981. 4. 2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장갑인

◎교육규칙제 230 호

서울특별시사설강습소수강료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설강습소수강료에 관  
한 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별표를 별지와같이 한다.

부 칙 ( 81. 4. 21 )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 설 강 습 소 수 강 료 징 수 한 도 액

계열별	과정별	일수강 시 간	반 당 정 원	수료 기 간	수 강 료				비 고
					입소료	월수강료	실습비	계	
문리계	종합반	6	40명	1년	6,100	26,000		32,100	
		6	70 "	1 "	6,100	25,300		31,400	
		8	40 "	1 "	6,100	29,700		35,800	
		8	70 "	1 "	6,100	28,900		35,000	
		3	40 "	1 "	3,000	14,200		17,200	

계열별	과정별	1일수강 시 간	반 당 정 원	수 로 기 간	수 강 료				비 고
					입소료	월수강료	실습비	계	
		3	70명	1년	3,000	13,900		16,900	
	단 과 반	1	40 "	1월		6,500		6,500	
		1	70 "	1 "		5,700		5,700	
		2	40 "	1 "		9,700		9,700	
		2	70 "	1 "		8,100		8,100	
	성인고시	2	40 "	1 "		14,300		14,300	
		2	70 "	1 "		12,600		12,600	
	회 화	2	40 "	1 "		14,300		14,300	
		2	20 "	1 "		19,300		19,300	
	종교철학	4	40 "	1 "		14,300		14,100	
기술계	이 발	3	20 "	6 "	2,300	14,000	4,600	20,300	
	미 용	3	20 "	6 "	2,300	11,300	2,600	16,200	
	가 발	3	20 "	6 "	2,300	11,300	2,600	16,200	
	라 디 오 텔레비존	3	20 "	6 "	2,300	13,100	3,800	19,200	
	무선통신	3	20 "	6 "	2,300	17,200	1,200	20,700	
	전 기	3	20 "	4 "		15,500	1,200	16,700	
	전화교환	3	20 "	3 "		14,500	1,600	16,100	
	태 이 프 트	3	20 "	6 "	2,300	18,200	6,200	26,700	
	로 목	4	20 "	6 "	3,100	19,000	5,400	27,500	
	전 속	4	20 "	6 "	3,100	19,000	5,400	27,500	
	속 량	4	20 "	6 "	3,100	19,000	5,400	27,500	

계열별	과성별	1일수강 시 간	반 당 정 원	수 로 기 간	수 강 료				비 고
					입 소 토	월수강료	실습비	계	
	기 계	3	20명	3월		16,600	6,400	22,900	
	시 계	4	20 "	6 "	3,100	17,800	2,600	23,500	
	냉 동	3	20 "	3 "		15,700	4,800	20,500	
	용 접	3	20 "	3 "		15,700	6,400	22,100	
	자동차운전 (1종보통)	4	20 "	2 "		24,900	49,500	74,400	
	자동차운전 (1종속성)	4	20 "	1 "		24,900	38,500	63,400	
	자동차운전 (2종보통)	4	20 "	2 "		24,900	29,400	54,300	
	자동차정비	4	20 "	6 "	3,100	14,400	7,300	24,800	
	중기운전	4	20 "	4 "		25,200	19,000	44,200	
	중기정비	4	20 "	4 "		25,200	8,400	33,600	
	프로그래머	3	20 "	1년	5,100	17,800	17,600	41,500	
	"	3	20 "	2월		17,800	17,600	35,400	
	키 편 치	2	20 "	2 "		14,400	11,600	26,000	
	인 쇄	2	20 "	2 "		14,700	4,300	19,000	
	실크스크린 인 쇄	3	20 "	2 "		15,200	4,300	19,500	
	낙 농	6	20 "	1년	6,300	32,000	3,800	42,100	
	병이리감별	3	20 "	3월		18,000	3,800	21,800	
	간 호	6	40 "	9 "	4,700	15,700	4,300	24,700	
	보 석	3	20 "	4 "		17,800	9,300	27,100	
	한약종상	3	40 "	6 "	2,300	16,800		19,100	
	문 각	3	20 "	3 "		18,200	3,800	22,000	



계열별	과 정 별	1일수강 시 간	반 당 정 원	수로 기간	수 강 료				비 고
					입 소 로	월수강료	실 습 비	계	
	나전철가공예	3	20명	1년	4,700	15,200	3,800	23,700	
	건축공예	3	20 "	1 "	4,700	15,200	3,800	23,700	
	도자기	3	20 "	1 "	4,700	15,200	3,800	23,700	
	사진	3	20 "	4월		14,400	2,300	16,700	
	편물	3	20 "	3 "		14,400	2,200	16,600	
	양제본과	3	20 "	4 "		17,200	2,400	19,600	
	양제연구과	3	20 "	4 "		15,300	3,300	18,600	
	양복	3	20 "	4 "		15,300	3,300	18,600	
	양제디자인	3	20 "	4 "		17,200	2,200	19,400	
	수자수	3	20 "	1년	4,700	21,500	2,300	28,500	
	미싱자수	3	20 "	6월	2,300	18,700	2,400	23,400	
해양제	해기원	6	20 "	3 "	2,400	19,000		21,400	
	보통선원	6	20 "	3 "	1,300	34,400		35,700	
예능제	피아노	1	20 "	1년	1,500	15,600		17,100	
	"	2	20 "	1 "	2,900	17,600		20,500	
	기악	2	20 "	1 "	2,900	18,100		21,000	
	성악	2	20 "	6월	2,300	17,300		19,600	
	작곡	2	20 "	1년	2,900	18,700		21,600	
	국악	2	20 "	6월	2,300	17,300		19,600	
	고전무용	1	20 "	1년	1,500	9,600		11,100	
	"	2	20 "	1 "	2,900	15,900		18,800	
	현대무용	1	20 "	1 "	1,500	9,600		11,100	
	"	2	20 "	1 "	2,900	15,900		18,800	
	영화기술	2	20 "	1 "	2,900	14,000		16,900	
	배우및무대예술	3	20 "	1 "	4,500	17,800		22,300	
	성우	3	20 "	1 "	4,500	17,800		22,300	
	동서양화	3	20 "	1 "	4,500	16,800	600	21,900	

계열별	과 정 별	1일수강 시 간	반 명 정 원	수로 기간	수 강 료			비 고	
					입소로	월수강료	실습비 계		
	동 서 양 화	2	20 명	1년	2,900	16,400	600	19,900	
	상 업 미 술	3	20 "	1 "	4,500	16,900	600	21,900	
	의 상 미 술	3	20 "	1 "	4,500	16,800	600	21,900	
	펜 글 씨	2	20 "	2월		10,800	600	11,400	
	붓 글 씨	2	20 "	4 "		14,700	600	15,300	
	프린트밋차-드	3	20 "	4 "		16,800	1,300	18,100	
	속 기	2	20 "	6 "	1,500	12,200		13,700	
가정계	한 북	3	20 "	4 "		17,100	2,200	19,300	
	요 리 본 과	2	20 "	3 "		13,000	4,200	17,200	
	요 리 연구과	3	20 "	3 "		14,100	8,900	23,000	
	인 형	3	20 "	1 "		18,400	2,200	20,600	
	구 술 비 즈	3	20 "	1 "		18,400	2,200	20,600	
	조 화	3	20 "	1 "		18,400	2,200	20,600	
사무계	부 기	2	40 "	1 "		12,500		12,500	
	주 관	1	40 "	1 "		8,800		8,800	
	결 리 실 무	2	40 "	1 "		13,200		13,200	
	타 자	1	20 "	6 "	1,500	5,600	2,900	10,000	
	"	2	20 "	6 "	1,500	10,900	4,800	17,200	
관광계	차 장	3	20 "	1 "		13,800	3,300	17,100	
	관 광 안 내	3	20 "	3 "		13,800	4,200	18,000	
	호 텔 안 내	3	20 "	4 "		15,400	4,200	19,600	
기 타	번 론	2	40 "	1 "		12,400		12,400	
	연 어 교 정	3	20 "	1 "		16,700		16,700	
체육계	체 육	1	20 "	6-12월	1,500	4,300		5,800	
독서실	독 서 실			1 "		11,000		11,000	
	"			1 일		430		430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5 호

도시계획사업(공공하수도)실시 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7 호 (81. 3. 27) 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88 호 (81. 4. 1) 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된 신길 6 동 간선하수도 공사를 하수도법 제 6 조 및 건설부공고 제 126 호 (79. 9. 15) 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

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4. 21.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기점 : 영등포구 신길 6 동 501 번지  
 종점 : 영등포구 신길 6 동 3797 번지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사업의종류 및 명칭 : 공공하수도 사업 (구거복개) 및 신길 6 동 간선하수도 공사
- 라. 사업의 규모 :  
 압거 (3 × 2.1 × 1 연) L = 478m  
 " (2.6 × 2.1 - 1 연) L = 164m
- 마. 사업착공 및 준공 예정일  
 1981. 4 - 1981. 12. 20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명세

토 지 및 건 물 조 서

토				지			건 물
소	재	지	지	지	소	성	건
소	재	지	번	지	유	명	물
소	재	지	번	지	자	명	물
영등포구신길 6 동		4022	답	37.8	경기도부천시삼곡동 557-8	김정환	해당없음
"		4035	답	131.3	중구필동 1 가 3-6	김민정	"
"		1545	답	32.3	서울별당관리실내	조정옥	"
"		1531	답	124	영등포구신길 6 동 1537	조정옥	"
"		1532	대	46	영등포구신길 6 동 4176	정재업	"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9 호</p> <p>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변경 지적 승인</p> <p>1. 서울시 고시 제 110 호 (81.4.7)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 위임에 의거</p>	<p>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 4.</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 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방학중학교	방학산 37 일대	16,793㎡ (5,080 평)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지적 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류	6 M	110 M	도봉구방학산 37	도봉구방학산 37	폐지
변경	"	"	"	"	"	"	"
신설	"	"	"	"	" 312	"	신설
기정	"	"	"	160 M	" 313	"	폐지
변경	"	"	"	"	"	"	"

\* 별첨 표시 도면과 같음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1 호</p> <p>서울특별시 고도지구 변경 결정</p> <p>1. 서울특별시 고도지구를 도시계획법 제 12 조 2 항과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p>	<p>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 4. 24.</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 고도지구 변경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고도제한
기정	회 고도지구	종로구 청운, 궁정, 통의, 적선, 팔판, 소격, 중학, 사간, 송현, 안국, 가회, 효자, 창성, 재동일대		774,000㎡	현지반고도로부터 10m 이하
변경	"	종로구 소격동 165번지 일대		27,428㎡	25미터 이하
변경	"	종로구 청운, 궁정, 통의, 적선, 팔판, 소격, 중학, 사간, 송현, 안국, 가회, 효자, 창성, 재동일대		746,572㎡	10미터 이하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제 142 호

공원시설사용결정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 5 조의 규정의 공원내에 설치한 운동시설 및 유흥시설의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한다.

공 원 시 설 사 용 료

종	별	구	분	금 액	비고
운	수영장사용료	대인 1 회에 대하여		840 원	
		소인 " "		540	
동	아동유영장	1 회의 사용에 대하여		120	
		장안평수영장	대인 1 회에 대하여	700	
시	정구장사용료	대인 " "		400	
		면당 평일 1 시간에 대하여		720	
설		면당 토, 일, 공휴일 1 시간에 대하여		1,200	

종	별	구	분	금	액	비	고	
운 동	탁구장	단식 30분당	대인		700원			
		복식	"		900			
		단식	"	중고생이하		500		
		복식	"			700		
시 설	로라스케이트장	1인 1시간당	대인		400			
			소인		300			
	스케이트장	대인 1회입장			400			
		소인	"		300			
	보트장	2인용 30분당			1,000			
유	라늘차	대인 1회에 대하여			360			
	창용열차	소인	"		180			
회	미니레일, 번개차	대인	"		240			
	두꺼비차, 비행기	소인	"		140			
시 설	밧메리차, 아폴로 의자, 유리집							
	흥차놀이, 꼬마기차 팽이놀이, 바츨카포 회전목마, 회전컵 회전그네, 달로켓트 요술의집, 아기차 (소인)	대인	"		150			
		소인	"		120			

부칙 : 이 고시는 1981.4.25 부터 시행한다.

1981.4.24.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3 호

공평구역제 6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 1. 건설부고시 제 285 호 ( 78.9.26 ) 및 동고시 제 533 호 ( 79.12.28 ) 로 재개발구역지정 및 재개발사업 계획결정된 공평구역제 6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인가 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 16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 과 및 공평구역제 6 지구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 관계도서생략 )

1981. 4.24.

서울특별시 장

다 음

-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공평구역제 6 지구 도시재개발사업
-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4 번지의

14 필지 일대

- 시행면적 : 3,677.6 ㎡
- 대지면적 : 2,906.7 ㎡
- 건축면적 : 1,119.96 ㎡
- ( 38.53 % )
- 연 면 적 : 20,462.23 ㎡ (534.16%)
- 층 수 : 지상 12 층
- 지하 3 층
- 용 도 : 사무실

-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종로구 인사동 194-4 번지
- 중앙교회

- 라. 시행기간 : 시행인가일 -
- 83 년 12 월 31 일

- 마. 시행인가년월일 : 81. 4.

- 바.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 가
- 64-8
-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 유지재단
- 이사장 김 창 희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1) 토지권리자별 권리명세

지 번	지 목	토 지 현 황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면적(㎡)	가분할지번(㎡)	소유자	현주소	근저당권자	주소
인사 194-4	사사지	2,156.9	가:2,041 나: 115.9	기독교대한감 리회유지재단	중. 태평 1가64		
관훈 198-54	종교용지	134.6	134.6	"	"		
인사 198-7	대 지	78.1	78.1	"	"		
관훈 198-5	"	4.5	4.5	임 원 상	관훈 198-5	주식회사한 국신탁은행	종로구전지동 68번지
인사 192-2	"	55.8	55.8	김 담 숙	관훈 30-9		
" 193-8 바	도 로	19.1	19.1	서울특별시			
" 193-6	대 지	251.2	가: 179.4 나: 71.8	백훈외 7인	인사 193-6		
" 193-7	"	251.2	251.2	김 안 수	" 193-7		
" 194-28 자	"	19.3	19.3	김홍자의 1인	마포망원 485-21		
" 194-31	"	236.6	가: 166.4 나: 70.2	김홍자의 1인	"		
" 194-1	"	93.2	가: 80.2 나: 13	김 옥 주	인사 216		
" 194-11	"	234	가: 106.5 나: 127.5	김 경 순	" 194-11	(주)서울신탁 은행	중구남대문로 2가 10-1
" 194-10	"	94.5	가: 85.4 나: 9.1	최 충 균	" 194-10		
" 194-21	"	1.3	1.3	박 국 현	소재 불명		
" 194-27	종교용지	47.3	47.3	남감리회선교 부유지재단	중. 태평 1가64		
계		3,677.6	3,677.6				

50-24 제 836 호 시 보 1981.4.27



2) 건축물 권리자별 권리명세							
지 번	건축물 현황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용도	구조	면적(평)	성명	주소	근저당권자	주소
인사동 194-4	교회	연와조와즙	186.77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중구태평로1가 64		
" 192-2	주택	목조와즙	25.0	김담숙	관훈동 30-9	(주)국민은행	중구남대문 로1가9-1
" 193-6	"	"	29.0	백훈외 7인	인사동 193-6		
		부속연와조	2.0	"			
" 193-7	"	목조와즙	38.0	김인수	" 193-7		
		부속연와조	2.0	"			
" 194-31	"	목조와즙	25.27	김홍자 외 1인	다포구망원동 485-21		
" 194-1	"	"	10.0	김옥주	인사동 216		
		부속연와즙	2.0	"			
" 194-10	"	복조와즙	15.0	최충균	인사동 194-10		
" 194-11	"	"	34.0	최경순	인사동 194-11	(주)서울 신타은행	중구남대 문로 2가 10-1
		부속연와조	1.0	"			
계			370.04				

제 836 호  
1981.4.27  
50-23

◎서울특별시고시제 14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  
결정및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8 호(76.1.21)로  
결정된바 있는 당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  
시계획법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2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79.12.10)의 권한위임  
시령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4.24

서울특별시장

도로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시진	종점	비고
기정	대로	1	37	35m	1,660m	이태원동	서방고동	340미터, 구간4m 확폭
변경	"	"	"	35-39m	"	"	"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45 호

사방지의 지정

사방사업법 제 3 조 동법시행령

제 1 조 및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였기 이  
를 고시한다.

1981. 4.24

서울특별시장

사방지정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주소	성명
서울	동작	사당	산18-3	임야	0.5008	0.5008	서울 용산합토가 70	엄창호
"	"	"	" -17	"	0.1500	0.1500	" 동대문신 설 81-140	김정하
"	"	"	" -18	"	0.1620	0.1620	" 관악남 현 472-1	김철성
"	"	"	" -24	"	0.1809	0.1809	" " " 528-8	조성휴
계					1.0007	1.0007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6 호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313 호 (78.10.20) 및  
 건설부고시 제 349 호 (79.9.24) 로  
 변경결정된 당시 도시계획시설(고속  
 철도)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  
 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

한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  
 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4. 24

서울특별시장

○ 고속철도(본선) 지적승인조서

시 설 명	규 모	위 치	비 고
도시고속철도 (지하철순환 선)	47.5차량기 지인입선 1.5	대청-을지로-한대-일수동- 화양동-삼신동-삼설교-서초 동-사당동-서울대-입구-봉 천동-도림동-영등포-석교동 신촌-아현동	동교동 - 아현동 간 2.48 지적승 인

○ 고속철도(부대시설) 지적승인조서

시 설 명	위 치	폭(㎡)	길이(㎡)	면적(㎡)	비 고
문래동 3가정차장	문래 3가 54번지앞	21	205	5,455	
당산 3가 "	당산 3가 335번지앞	20	205	5,250	
당산 5가 "	당산 6가 297번지앞	20	210	4,450	
합정동 "	서교동 394번지앞	23	205	5,252	
동교동 "	동교동 165번지앞	23	205	5,252	
신촌동 "	신촌로 타다	33	205	5,597	
이대앞 "	이화여대 입구	33	205	5,000	
아현동 "	아현동 329-1번지앞	38	205	6,115	
충정로 "	충정로 3가 295-60	20	205	5,250	
시청앞 "	반도호 앞	25	205	5,455	
을지로 2가 "	을지로 2가 141번지앞	22	205	4,756	

시 설 명	위 치	폭(m)	연장(m)	면적(㎡)	비 고
을지로 4가점차장	을지로 4가 261번지앞	22	205	5,430	
을지로 6가 "	서울운동장앞	24	205	6,050	
신당동 "	신당동 106번지앞	20	205	5,034	
상왕십리 "	하왕십리동 940번지앞	20	205	4,956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47 호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95 호 ( 75.6.28 )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 79.12.10 )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 과와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1. 4.25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도봉구 공릉동 126 산 228-4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서울여자대학 시설확충
3. 사업시행규모  
가. 시행면적 : 11,889 평방미터  
나. 건축계획 : 건축면적 - 2,890.36 평방미터 ( 3 동 )  
연면적 - 10,813.32 평방미터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동별층수 및 면적  
대학원 - 지하 1 층, 지상 3 층 연 1,968.13 평방미터  
도서관 - 지하 1 층, 지상 3 층 연 4,366 평방미터

<p>학생회관 - 지하 1층, 지하 4층 면 4,479.19평방미터</p> <p>4. 시행자 주소, 성명 : 도봉구·공통동 산 228-32</p> <p>학교법인정의학원이사장 김 성 섭</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준공예정일 : 1982.11.30</p> <p>6.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도면생략)</p> <p>7. 공사실제도면 : 별첨(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과와 도봉구청에 보관함.</p> <p>8. 수용할 토지 : 없음</p> <p>9. 토지의 소유자 : 학교법인 정의학 원.</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48 호</p> <p>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 시행자신청고시</p> <p>1. 건설부고시 제 55호(81.2.20)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결정되어 서울시고시 제 83호(81.3.23)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특정구역 에 대하여</p> <p>2. 도시재개발법 제 12조 및 제 13조 에 의거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신청 받고자 고시한다.</p> <p>1981.4.27 서울특별시장</p>		
<p>가. 내역</p>			
<p>구역명</p>	<p>위 치</p>	<p>면적 (㎡)</p>	<p>비 고</p>
<p>목적구역</p>	<p>중구 북정동 11번지일대</p>	<p>5,763.3</p>	
<p>나. 신청기간 : 고시 81.4.27 - 81.5.11 까지</p> <p>다. 제출처 : 서울시건축국 재개발 2과</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49 호</p> <p>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p> <p>1. 건설부고시 제 131호(76.8.2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56호(76. 10.2)로 아파트지구 지적 승인</p>	<p>된 영동아파트지구(제 3 - 2 지구) 일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21조 동설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를 당해 아 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 정하였기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주택국(주택행정과) 및 강남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킨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1. . .</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내역</li> <li>가. 사업시행자: (주)한양주택 배종열</li> <li>나. 사업시행 구역의 표시: 강남구 서초동 산 189-2 일원 (아파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지구 제 3-2지구일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 사업시행면적: 5,841 평</li> <li>라. 사업계획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아파트건립</li> <li>○ 사업규모: 아파트 25-45 평형 252세대 유치원 1동 (부지 363평)</li> <li>○ 사업비: 11,565,000천원</li> <li>○ 사업기간: 1981.4~1983.4.</li> <li>○ 관계도면 열람기간: 81.4.25 - 81.5.2 (7일간)</li> <li>○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주택국(주택행정과) 강남구청 (시민봉사실)</li> </ul> </li> </ul>
--	--

토 지 목 록

동 면	지 번	종전면적	환지면적	소유자	비고
서초동	산 189-2	1,560	가. 5,052.1 나. 343.3	전양기업	동의
"	산 188	750		"	"
반포동	산 453-2	239		"	"
"	산 25-1	4,860		"	"
"	산 25-2	510		"	"
서초동	127	238		187	"
채비지	368-4		100.2	서울시	
"	378-1		114	"	
"	327-2		44.4	삼호주택	
계			5,841		

<p>◎ 서울특별시고시제 150 호</p> <p>도시계획시설 ( 학교 )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64 호 ( 81.3.10 ) 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을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p>	<p>제 463 호 ( 79.12.10 ) 의 권한유입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성비과 및 시민봉사실과 대림 2 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 4. 27. 서울특별시장</p>
--	--

가.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신설	학교	영등포구대림동 993-17일대	7,983 (2,415명)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151 호</p> <p>도시계획사업 ( 백화점 ) 시행허가</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102 호 ( 81.4.4 ) 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 백화점 )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 및 사업계획은 시장정과,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4. . . 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의 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1-173</p> <p>2. 사업의 종류 및 위치 : 도시계획사업 ( 백화점 ) 가칭 여의도백화점</p> <p>3. 사업규모 : 대지 1,898평 ( 6,260㎡ ) 건평 4,100평 ( 13,554㎡ )</p> <p>4. 사업의 시행자 : 영등포구여의도동 1-173 여의도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용한</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준공예정일 : 82.4.30</p> <p>6.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p> <p>7. 공사설치도면 및 사업계획 : 별첨 (도면생략)</p> <p>※ 사업계획은 시장정과에, 도면은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보관함.</p>
---	---

<p>◎ 서울특별시고시제 152 호</p> <p>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인가</p> <p>1. 건설부고시 제 198 호 ( 71.4.7 ) 로 시설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1 호 ( 74.1.11 ), 제 92 호 ( 79.2.28 ) 로 지적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 도로 및 하수도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 79.12.10 )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4.28. 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의 위치 : 구로구 독산동 103 의가 ~ 관악구 신림동 477 의2</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산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p> <p>3. 사업의 규모 가. 도로포장 : B = 20 m L = 1038 m A = 158 a 나. 하수도시설 : D = 600-900 mm L = 1,303 m</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81.9.3</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토지조서 참조</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토지조서 참조</p>
--	--

토 지 조 서

번호	동 명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관악구독산동	산122-13	임야	312	서대문구홍은동177-14	조 천 석	
2	"	산201-6	"	496	동작구노량진동119-162	김 병 만	
3	"	산202-5	"	587	종로구해화동20-21	김 병 철	



<p>◎서울특별시고시제 153호</p> <p>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중 건설부고시제 112호(81.4.11)로 변경결정된 서초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규정 및 건설부 고시 제 463호(79.12.10) 권한위임사항에</p>	<p>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 4.29 서울특별시장</p>
---	--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승인조서

공원 번호	공원종류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근 12-21	근린공원	서초공원	강남구 서초, 방배동	578,959㎡	

나. 지적승인도면 : (생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154호</p> <p>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공원)을 다음과같이 신설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제 463호(79.12.10)</p>	<p>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과 및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 4 서울특별시장</p>
---	--

가.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월곡어란이공원	성북구하월곡동 77-45	784㎡(237평)	일부채지
변 경	"	"	합 331㎡(100평)	
변 경후	"	"	453㎡(137평)	
기 정	어린이공원	강서구공향동 42-6, 42-19	399㎡	위치변경
변 경	"	강서구공향동 42-11	397㎡	

나.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도면 : 별첨도면표시외 같음(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55 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70호(80.11.6)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393호 (80.11.27)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호 (79.12.10)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1. 4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시행지 : 성동구성수동 649-1호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3.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성동구성수동 2가 649-1 호대진운수(주) 김창남, 정진섭
4. 사업시행기간 : 1981.4-1981.10.31
5. 사인규모  
가. 사업시행면적 (총면적 2378 평방미터 중 722 평방미터)

나. 복리시설전물 1동 (전평 276 평방미터)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와 소유권명세: 별첨 (생략)
7. 위치 및 계획명면도: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56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제 264호 (80.7.21)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한 마포구성산동 123-7 번지의 20 필지 (14,143㎡)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제 26 조와 건설부고시제 463호 (79.12.10)에 의거 다음과같이 사업시행허가기간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1. 4

서울특별시장

다 음 (변경사항)

- 1) 당초사업기간  
1980.7.21 - 1981.4.30
- 2) 변경사업기간  
1980.7.21 - 1982.4.30

◎ 서울특별시고시제 15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1 호(81.1.5) 및 동고시 제 38 호(81.2.17)로 학교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79.12.10)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4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강서구신정동 88-3의 10 필지와 신정동 281-2의 13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신북중학교와 신북국민학교
3. 규모 및 면적 : 15881㎡(4804평)와 10119㎡(3061평)

4. 사업시행지주소성명 :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년월일 : 1981. . . . .
  - 나. 준공예정일 : 착수년월일로부터 1년
6.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도면생략)
7. 공사설계도면 : 별첨(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58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학교)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463 호(79.12.10)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도시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4. 30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중·고등학교	강서구방화동 541 일대	34,445 ㎡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17 호

KS 표시정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KS(한국공업규격) 표시 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1. 4.

서울특별시장

- 1. 허가번호 제 1282 호
- 2. 허가일자 76. 3. 11
- 3. 제조업체명 김전기업사
- 4. 대표자 한상덕
- 5. 소재지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 171
- 6. 품 목 철근콘크리트근거

- 7. 규격번호 4023
- 8. 처분기간 공고일로부터 3 개월
- 9. 처분사유 규격미달

◎ 서울특별시공고제 118 호

기본측량실시공고

기본측량실시물 측량법 제 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1. 4

서울특별시장

다 음

- 1. 사업명 : 삼각점조사
- 2. 사업량 : 23 점
- 3. 사업계획 및 실시기관 : 국립지리원
- 4. 측량지역 : 다음참조
- 5. 작업자 : (주) 삼경기술용역단  
김재영
- 6. 작업기간 : 1981.3.13 - 8.23

삼 각 점 조 사 내 역

도 역 명	점 번호	소 개 지	비 고
NJ 52-10-11	317	영등포구 고척동	
서울	454	강서구 화곡동	
	457	강서구 염창동	

도 업 명	건 번호	소 제 지	비 고
NJ 52-10-12 상 동	316	강남구반포동	
	317	강남구삼성동	
	467	강남구신천동	
	470	강남구잠실동	
	474	강남구둔촌동	
	471	강남구성내동	
	477	강남구암사동	
	478	강남구마천동	
	480	강남구하일동	
	NJ 52-10-18 안 양	304	영등포구온수동
307		영등포구시흥동	
308		관악구신림동	
421		관악구상도2동	
424		관악구사당동	
NJ 52-10-19 수 원	303	강남구철곡동	
	402	강남구우면동	
	405	강남구도곡동	
	406	강남구신철동	
	409	강남구일원동	
	416	강남구장지동	

◎서울특별시공고제 119 호

서소문구역제3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428 호 (78.12.29) 및  
동부고시제 251 호 (79.9.21) 로 구  
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된 서소문  
재개발구역 제3지구 토지등의 소  
유자대표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교상경)로부터 인가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제 15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 공고  
한다.

2.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편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 및 개편통지 능라  
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서 감람한다.

1981.4.27.

서울특별시강

다 음

가. 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2가 191번지의 146필지

나. 시행면적 : 11,572㎡

다. 대지면적 : 8,856.3㎡

라. 공공용지구담 : 2,715.7㎡

마. 건축계획 (규모 및 용도는 건축허가서로 확정함)

건축면적 : 3,399.48㎡  
(전폐율 38.45%)

연면적 : 85,625.3㎡  
(용적율 663.8%)

층 수 : 지상 17층, 지하 4층

용 도 : 업무시설

바. 시행자 : 토지등의 소유자 (38명)  
대표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상겸)

사.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4년

아. 공람기간 : 81.4.27-81.5.26  
(30일간)

자. 공람장소

1)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 1과  
(70-4627)

2)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2가 250번지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771-33)

(교) 3102)

○서울특별시공고제 120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87호 (78.5.1)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309호 (78.6.22)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대로 3류로선인 경화여상-오스카극장간도로 포장공사 구간내 저축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34조 1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부하고져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계서판

나. 공고기간 : 81.4.25-81.5.10

1981.4.28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1. 사업시행지 : 재기동 655 번지 - 재기동 289 의 6 번지 1 차년도 : 재기동 620 의 113 - 재기동 435 번지 2 차년도 : 재기동 655 번지 - 재기동 239 의 6 번지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동대문 구천장 )
2. 사업의종류와명칭 : 정화여상 - 오스 카극장간도로포장공사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1982.12.31
3. 사업의규모 : 도로포장 폭 : 25 M 연장 : 820 M 1 차년도 도로포장 폭 : 15 M 연장 : 21 M 2 차년도 도로포장 폭 : 25 M 연장 : 601 M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 별첨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재기동정화여상 - 오스카극장보상부관내역  토지수용평수 : 27 필지 1095㎡4 ( 331 평 35 )  건물보상 : 7 동 122.24 평
토 지 조 서	

순 위	당초지번	수용지번	지 목	수용지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재기동 620-2	재기동 620-119	대	90.6	이문동 130-1	이해원
2	620-16	620-121	"	43.8	재기동 620	신영분
3	620-17	620-122	"	32.10	" 620-17	이성천
4	620-18	620-123	"	33.7	" 620-18	오명구
5	620-21	620-124	"	39.7	" 620	김민술

순 위	당초지번	수용지번	지 목	수용지척	소 유 자	
					주 소	성 명
6	계기동 620~22	계기동 620~25	대	46. 2	계기동 620~22	최소자
7	620~23	620~26	"	57. 8	" 620~23	도재홍
8	620~30	620~38	"	37. 2	" 620~30	장인수
9	620~29	620~29	"	59. 5	" 620~29	안기중
10	620~31	620~31	"	49. 6	" 620~31	정창영
11	620~32	620~32	"	27. 4	" 620~32	강영자
12	620~33	620~39	"	29. 5	" 620~33	정정일
13	620~47	620~47	"	23. 1	" 620~47	정하규
14	620~48	620~40	"	62. 2	" 620~46	기노혁
15	620~48	620~48	"	52. 9	" 620~48	이옥동
16	620~49	620~41	"	42. 7	" 620~49	배천식
17	620~77	620~77	"	71. 9	" 620~77	백창기
18	620~78	620~78	"	26. 6	" 620~78	방경환
19	620~79	620~79	"	39. 7	" 620~79	최연균
20	620~80	620~50	"	27. 1	" 620~80	김달숙
21	620~112	620~112	"	24. 1	경기도연천군남면 황지리 253	박동재
22	620~111	620~51	"	40. 0	620~111	김인규
23	620~113	620~113	"	55. 1	620~113	지인철
24	620~76	620~76	"	75. 4	620~76	전세영
25	620~114	620~53	"	6. 7	620~114	지인철
26	620~82	620~48	"	0. 2	620~82	고홍규
27	620~14	620~20	"	0. 6	620~14	강정수



진 물 조 서

순위	소재지	구조	용도	건축 년월일	수용평수	소유자	
						주소	성명
1	계기동 433~5	철근콘크리트 합석층	주택및 점포	61. 4.20	지하3.50 ①층14.70 ②층14.70	계기동 433~2	김중화
2	" 595	철근콘크리트조 와습	주택	63. 7.2	①층 15.30 ②층 15.30		한희순
3	" 595	목조와습	"		6.50		김창준
4	" 594	목조와습	"	61. 10.18	9.80	계기동 594	이원식
5	" 594	목조와습	"	61. 10.18	6.70	"	이시용
6	" 620~2	색멘부벽 와습	"	59. 8.20	19.40	이문동 255~109	이해원
7	" 620~77	목조 색멘와습	"	68. 3.30	13.74	620~77	백창기

◎ 서울특별시 공고 122 호

서울특별시포장도로개수공사공고

1.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개수공사계획이 확정되어 도로법시  
행령 제 24 조의 3 외규정예 외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로국도로  
보수과에 비치하여 유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4.28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50

공사명	노선명	시행구간	시행시기	시행자	공사내역
포장개수공사	세종로	광화문-세종로	81.5.1 - 81.10.30	서울특별시청	부분개수

공사명	노선명	시행구간	시행시기	시행자	공사내역
포장계수공사	태평로	세종로-시청-남대문	81.4.1 - 81.12.30	서울특별시청	부분계수
"	종로	세종로-동대문	"	"	전면계수
"	공감로	양화교-김포공한	"	"	부분계수
"	황산로	동대문-청담리	"	"	전면계수
"	왕십리	성동경찰서-한양대학-성동교	"	"	"
"	금호로	문화동-금호동로타리	"	"	"

◎ 강서구공고제 2 호

공인제작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춘동장의 직인 및 제인을 제작하였기 동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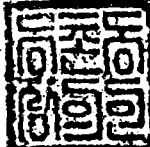

1. 제작사용년월일 : 1981.4.24  
18:00

2. 제작된 직인 : 동춘동장의 직인 및 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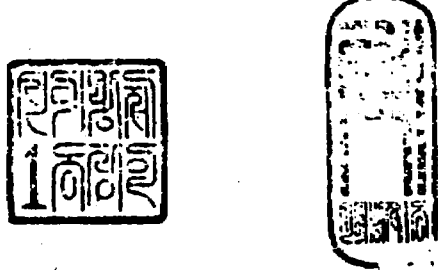
3. 공인제작인명 :  
  
1981.4.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공 인 의 인 명

인  명	 	 
공인명	동춘동장의 직인 및 제인 ( 제작 인 )	동춘동장의 직인 및 제인 ( 개 작 인 )

<p>◎ 동작구공고제 45 호</p> <p>동장직인 제작공고</p> <p>동작구 신대방 1동장의 직인 및 제인이 마멸되어 관인규정 제 8 조 및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 6 조에 의</p>	<p>하너 제작하였기 아래와같이 공고함</p> <p>1981.4. .</p> <p>동 작 구 청 장</p> <p>1. 사용일자: 1981.5.8</p>
공 인 의 인 영	

인 영	
공인명	신대방 1 동장 직인 및 제인 ( 제작인 )
인 영	
공인명	신대방 1 동장 직인 및 제인 ( 개각인 )

◎강동구청공고제 30호

공인개작사용승인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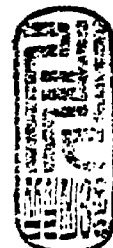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실3동장 공인물 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1.4.23.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

- 1. 공인개작사용계시일자 : 1981. 4.27.
- 2. 개작된공인명 : 잠실 3동장의 직인 및 계인
- 3. 공인개작인명 : 다음

공 인 인 명

인	 
영	

공인명 잠실 3동장 직인 및 계인

예 규

서울특별시 기초점설치 및 관리규정 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1.4.29.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

◎서울특별시예규제 408호

서울특별시기초점설치및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기초점 관리업무를 체계화하여 계획성 있는 기초점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규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초점"이라 함은 지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적삼각점, 도근점의 표시 또는 표지와 그 측량성표를 말한다.
- 2. "중관점"이라 함은 전시지역

내외 기초점을 총괄하는 시장들 말한다.

3. "소관청"이라 함은 기초점을 관리하는 구청장을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소관청으로부터 기초점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위촉관리자"라 함은 소관청이 공무원이 아닌자에게 기초점 관리를 위촉한 자를 말한다.

6. "원인행위자"라 함은 기초점 표지를 손상하거나 기초점 위치를 변동시켜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대장의 정비) ①소관청은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초점방도를 첨부하여 이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 기본대장

가.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측량성 표표 (별지제 1 호서식)

나. 도근점 : 도근점표석대장 (별지제 2 호서식)

(2) 보조대장

가.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점 실태조사카드 (별지제 3 호서식)

나. 도근점 : 도근점 실태조사카드 (별지제 4 호서식)

②총괄청은 기초점 총괄대장을 비

치하고 소관청으로부터 제 5 조에 의한 자료제출이 있을 경우 이를 총괄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 5 조 (자료제출) 소관청은 기초점의 설치, 변경, 손상, 망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중의 익월 10일까지 관계자료를 시장 (참조: 지적과감) 에게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장정리) ①총괄청은 기초점의 증감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법령에 의거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기초점 기본대장 및 보조대장을 비치하고 기초점의 증감, 이동사항이 있거나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기초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정동별, 노선별, 식별번호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 번호를 부여 관리한다.

법 정 동 - 노 선 별 - 식 별 번호  
○○○○-○○○○-○○○○

④보조대장은 기초점관리자별로 분류번호를 연필로 부여 이를 관리토록하며, 대장정리 사항은

담당자(관리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7 조 (기초점관리) ①소관청은 구청관내에 있는 기초점을 관리한다. 다만, 간할구역의 경계에 있는 기초점은 시장이 그 관리소관청을 지정한다.

②소관청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초점을 감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이상 무유를 확인토록 한다.

③관리자는 다음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기초점의 표식 또는 표지가 이동파손, 훼손되었을때
- (2) 기초점의 표식 또는 표지가 이동매물, 망실되었을때
- (3) 기타 중요한 사항

④관리자는 기초점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원인행위자로부터 이를 원상대로 복원시키거나, 재설치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자에게 기초점관리를 위촉하여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 (기초점 보존) ①소관청은 기초점이 고의 또는 공사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초점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재설치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기초점의 망실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망실되어 원인행위자를 알수 없을 때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직접 재설치를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기초점을 재설치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한 증빙서류(신뢰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이 하지 아니한 증명)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이를 관제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예산확보의 곤란성과 사업추진의 애로등을 방지하여 재설치하여야 할 기초점을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초점 설치 기준

제 9 조 (계획) ①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기초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측량에 관한 기본계획(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작성)을 작성하여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시적인 가설표지를 설치하여 기초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측량작업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소관청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설치기준) ①지적삼각점은 총괄청의 기본계획에 의거 설치하고 도근점은 소관청의 설치계획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초점의 표식 및 표지의 규격과

보호시설은 별지 제 7, 8 호서식에 의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측량방법) 기초측량은 관제법령에 의한 재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3 장 기초점의 측량성 과 관리

제 12 조 (측량성 과의 보관관리등)

① 소관청은 기초측량성 과에 대하여 지적기술자의 검사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관계인 (검사요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영구표지를 사용한 기초점일 경우에는 관계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② 기초점측량검사결과 그 성 과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적측량업무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소관청은 검사할 필한 기초측량성 과와, 측량기록을 지적 사무처리 지침 제 7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고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지적기술자의 열람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측량성 과 열람승인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무료로 열람을 시켜야 한다.

제 13 조 (지적기술자등의 수인의무)

① 지적기술자는 지적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점이 설치된 지

역에서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기초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기초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청에 관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청은 지적기술자의 보고에 의하여 기초점의 측량성 과가 현상과 상이하게 된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측량성 과를 수정하고 이를 관계대장에 상세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③ 지적기술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공부정리를 목적으로하는 측량은 측량원도에, 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측량은 드레싱대과 (성 과도크기) 에 측량성 과 종합도 작성요령에 준하여 측량성 과를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비 용 징 수

제 14 조 (징수대상) 지적법령에 규정 한 기초점표지를 이전하거나, 그 현상을 변경할때 이로 인한 이전, 재설치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직접 재설치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비용의 산출 및 결정) 재설치 또는 보수비용의 산출기준은 재설치할때는 재설치당시의 시가로,

예산여입조치 할때는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  
가(설계가액)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 16 조 (비용의 통보 및 납부)

①관리자는 제설차 또는 보수비용  
을 산출하여 세입조정 의뢰를 한  
후 납입통지서를 교부받아 원인행  
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원인행위자는 납입통지서에 의하  
여 지정은행(시금고)에 이를 납  
부한다.

제 17 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  
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적사무처  
리지침(내무부예규)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사 령

◎ 1981. 4.21 명 145 호

동작구민방위국장  
석 기 관 장 영 순

지방서기관에 임함  
강남구 건설관리국장 직대

서울특별시장

◎ 1981. 4.21 명 146 호

원호차관리국관리부장 리 대 교  
서 기 관

구로구 민방위국장

강남구건설관리국장 주 화 중  
지 방 서 기 관

서기관에 임함  
마포구 민방위국장

대 통 령

◎ 1981. 4.23 명 147 호

행 정 과 윤 상 수  
지방행정주사

내무국(사회정화추진요원)

행 정 과 장 기 연  
지방행정주사

내무국(사회정화추진요원)

새마을지도과 이 길 홍  
지방행정주사

내무국(사회정화추진요원)

시 민 과 이 동 국  
지방행정주사

내무국(사회정화추진요원)

서울특별시장



<p>◎ 1981. 4.24 명 149 호</p> <p>총 무 과 이 종 록 지방행정사무관</p> <p>내무국 (사회지도과 준비요원)</p> <p>서울특별시 장</p>	<p>◎ 1981. 4.24 명 151 호</p> <p>새종문화회관장 윤 백 영 지방부지사관</p> <p>지방이사관에 임함. 새종문화회관장에 포함.</p> <p>서울특별시 장</p>
<p>◎ 1981. 4.24 명 150 호</p> <p>기획담당관 민 경 태 지방행정사무관</p> <p>새마을운동중앙본부 파견근무 (81.4.24 - 82.4.23)</p> <p>감사담당관 정 관 훈 지방행정주사</p>	<p>◎ 1981. 4.24 명 152 호</p> <p>공무원교육원장 최 상 근 부이사관</p> <p>이사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장에 포함</p>
<p>새마을운동중앙본부 파견근무 (81.4.24 - 82.4.23)</p> <p>강남구재무과 서 철 모 지방행정주사</p> <p>새마을운동중앙본부 파견근무 (81.4.24 - 82.4.23)</p>	<p>◎ 1981. 4.24 명 153 호</p> <p>동작구민방위국장 장 영 순 서기관</p> <p>수도국업무과 김 영 수 행정사무관</p> <p>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전출을 명함</p> <p>대 통 령</p>
<p>강동구사회과 윤 용 태 지방행정주사</p> <p>새마을운동중앙본부 파견근무 (81.4.24 - 82.4.23)</p> <p>서울특별시 장</p>	<p>◎ 1981. 4.29 명 154 호</p> <p>동대문구민방위국장 조 영 호 서기관</p> <p>울지연습 81 중앙계획통계단요원 파견근무를명함 (81.4.30-81.9.30)</p>

50-50 제 835 호 시

선 1981.4.27

<p>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p>	<p>김명현</p>	<p>총무과 지방행정주사</p>	<p>노을표</p>
<p>울저연습 81 중앙계획통계단요원 파견근무명합 (81.4.30-81.9.30)</p>		<p>교통국</p>	
		<p>서울특별시</p>	
<p>◎ 1981. 4.29</p>	<p>명 155 호</p>	<p>◎ 1981. 4.30</p>	<p>명 159 호</p>
<p>주택행정과 지방행정주사</p>	<p>이준제</p>	<p>기획정리과 지방토목기사보</p>	<p>최영규</p>
<p>인사과</p>		<p>지방공무원법 제 31 조 제 1 항 제 4 호 및 동법 제 61 조의 규정에 의거 81.4.14자로 당연퇴직</p>	
<p>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p>	<p>이석화</p>		<p>서울특별시</p>
<p>인사과</p>		<p>◎ 1981. 5.7</p>	<p>명 157 호</p>
<p>구로구새마을과 지방행정주사보</p>	<p>정철용</p>	<p>대건시래동 2동 지방행정서기보</p>	<p>김재민</p>
<p>인사과</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몽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용산구용문동 지방행정주사보</p>	<p>허동무</p>		<p>서울특별시</p>
<p>인사과</p>			<p>서울특별시</p>